문서번호	인사처-5801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8.30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219호

★대리	팀장	인사처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
협 조	팀장			

『일과 삶의 균형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』

2016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계획(안)

2016.

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| 인사처

『일과 삶의 균형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』

2016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계획(안)

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확대 및 활성화를 추진하여 직원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차원에서는 잠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함.

Ⅰ 관련근거

○ **지방공기업 시간선택제일자리 운영기준 통보** (안전행정부, ′14.2.28)

○ **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운영계획** (이사장 방침 제25호, ′15.2.3)

○ **인사규정 제8조의 3(근무시간의 단축 임용)** (인사규정 개정, ′16.2.12)

Ⅱ 운영개요

○ **개　　념** : 『근로기준법』 상 '단시간근로자'에 포함되며, 근로조건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

○ **근무시간** : 주당 15~30시간, 1일 최소 3시간 이상

○ **인사관리** : 정·현원에 포함되는 정규직 근로자 (예시:4시간/일은 0.5명으로 환산)

○ **유　　형**

┌ ① **신규형** : 결원·증원 등 기관별 인력 수요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

※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 희망시, 경쟁에 의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.

└ ② **전환형** : 전일제 근로자의 본인 희망에 의한 시간제로의 전환 가능

○ **운영기준** (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기간제법 제8조)

- **균등처우** : 사업장의 동종·유사 업무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 처우 아니 됨.
- **시간비례보호의 원칙** :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

Ⅲ 운영계획

□ 운영가능 직무 판단

○ 대체근무가 용이한 정형화된 업무, 협업의 필요성이 적은 업무로서, 업무 연속성 저해의 우려가 있는 업무는 적용제외

○ 향후 직원 수요조사, 직무조사 및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하여 특정시간대 업무, 전문자격·지식활용 업무 등 운영가능 직무 추가 발굴

□ 단계별 추진계획

1단계 … 즉시 도입 가능직무에 대하여 우선 시행(신규형)

○ **대상직무** : 장애인콜택시 시간제 운전원

○ **근무시간 및 내용** : 일 5시간, 주 30시간 / 장애인콜택시 차량 운행

○ **자격기준** : 1종 보통 운전면허,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, 5년 무사고 운전 등

○ **채용인원** ※ 정원 확보(외부요인) 전까지는 한시적 계약직원으로 운용

- 상반기 110명 채용 완료('16.3월) / 하반기 20명 채용 예정('16. 9월 중)

2단계 … 추가 수요조사 등을 통한 운영가능 직무 추가 확대(신규형, 전환형)

직원 수요조사(1차) 결과(요약)

▸ **조사기관 및 기간** : 고용노동부 / 2016. 4. 27 ~ 6. 7

▸ **조사내용** : 전환형 시간선택제 및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의사

▸ **조사결과** * 공단 참여인원 606명(설문대상 2,742명 대비 22.1%)

· 606명 중 63명(10.4%)이 3년 이내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함.

· 2시간 이하 단축근무를, 6개월~1년 미만 동안 활용을 원하는 인원이 가장 많음.

· 606명 중 24명(4%)은 임금 20% 이상 감소를 감수하고도 3년 이내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함.

·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중 8명(8.0%)은 3년 이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싶어함.

○ 추진절차

① 세부 운영 지침(안) 검토	➡	② 직원 수요조사 및 직무설정 의견조회	➡	③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정비	➡	④ 제도 확대시행
▸ ~ '16. 9. 30		▸ 10.1 ~ 10. 31		▸ 11.1 ~ 11.30		▸ '16. 12. 1 ~

① **세부 운영지침(안) 검토** : 근무시간 유형,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등

☞ 주 20시간(일 4시간) 근무 원칙, 향후 필요시 일 3~5시간으로 확대 검토

② **직원 수요조사 및 대상 직무설정을 위한 부서 의견 조회**

☞ 직원 수요조사

· 1차 설문조사결과(고용노동부 주관), 참여율이 22%로 매우 저조하였고,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제시가 없었으므로,

· 보수 · 승진 · 호봉 · 수당 · 성과급 등의 인사관리지침과 근무시간에 비례한 실질적 임금감소 규모 등의 안내를 수반한 재조사를 통하여 실수요를 파악하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

☞ 부서 의견조회 대상 직무(안)

직무내용	現 직원신분	관련부서
· 장애인콜택시 운전 및 상담업무	서비스직	장애인콜택시운영처
· 주차요금 징수업무	일반직	주차시설운영처
· 혼잡통행료 징수업무	일반직	교통부대시설처
· 공단 대표전화 안내업무	일반직	기획조정실
· 공공자전거 안내(상담)업무	계약직	공공자전거운영처
· 상수도 검침·교체 업무	일반직	상수도지원처
· 육아(휴직) 등으로 인하여 잠재수요가 있는 직무	-	全 부서

③ **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정비** : 운영내규, 정원 조정 등 실행 제반사항 마련

④ **제도 확대 시행** :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도입 및 지속적 발굴 추진

Ⅳ 관리지침 기본(안)

□ 보수·승진(급) 관리

○ **보수 및 수당** :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되, 수당 성격에 따라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 가능

○ **복리후생** : 분할 가능한 금전적 급부인 경우, 근로시간 비례원칙 적용하되 분할 불가능한 급부는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 가능

〈수당 및 복리비 등 지급〉

구 분	효도휴가비	연차수당	성과급	근속수당	중식비	대민활동	업무보조	장려금	선택복지	가족수당	건강검진
시간비례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
동일지급										○	○

※ 정원가산업무비, 피복비, 교육훈련비, 체련대회비는 현원 0.5인을 1인으로 예산 계상

○ **승진최소소요연수** :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(주 30시간 근로자는 0.75배 인정)

○ **호봉** :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승급 (통상근무 전환시 근로시간비례원칙에 따라 호봉 재산정)

□ 복무관리

○ **겸직금지** : 해당직무이외 영리 목적의 업무종사 불가, 허가 없이 직무 겸직 불가

○ **휴가 등** : 유급휴일, 산전 후 휴가의 부여는 동등하게 취급하며, 연차 및 각종 휴일·휴가 수당의 계산은 근로시간 비례보호의 원칙 적용

- 연차유급휴가 : 통상근무자의 연차휴가일수 대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
-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 :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휴가 일수 보장

□ 교육·훈련

○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기회 부여하되, 연간 교육이수 시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

Ⅴ 행정사항

○ 실수요 규모 파악 및 대상 직무설정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및 부서 의견 조회 실시 (인사처)

○ 관리지침, 정원 등을 반영한 관련 내규 및 ETIS 등 인사관리시스템 정비 (기획조정실 협조)

○ 본 방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및 행자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기준에 따름. 끝.